

제47조의2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1항 관련)

해당연도	비율(%)
1. 2018년도	18.0
2. 2019년도	21.0
3. 2020년도	24.0
4. 2021년도	27.0
5. 2022년도 이후	3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3호, 2017.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20.1~23.55GHz, 23.55~25.25GHz, 25.25~29.5GHz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 K164 및 K176C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1 - 23.55 GHz

국 제		
(1)	(2)	(3)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21.2-21.4		
지구탐사위성(수동) 고정 이동 우주연구(수동)		
21.4-22 방송위성 5.208B 고정 이동 5.530A 5.530B 5.530D	21.4-22 고정 이동 5.530A	21.4-22 방송위성 5.208B 고정 이동 5.530A 5.530B 5.530D 5.531
22-22.21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5.149		
22.21-22.5		
지구탐사위성(수동)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149 5.532		
22.5-22.55		
고정 이동		
22.55-23.15		
고정 위성상호간 5.338A 이동 우주연구(지구대우주) 5.532A 5.149		
23.15-23.55		
고정 위성상호간 5.338A 이동 5.149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1.2-21.4	
지구탐사위성(수동) 고정 이동 우주연구(수동)	
21.4-22	
방송위성 5.208B 고정 이동 5.530A 5.530B 5.530D	
22-22.21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5.149	
22.21-22.5	
지구탐사위성(수동)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149 5.532	
22.5-22.55	
고정 이동	
22.55-23.1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우주연구(지구대우주) 5.532A 5.149	
23.15-23.55	
고정 위성상호간 5.338A 이동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K176C	

23.55 - 25.25 GHz

국 제		
(1)	(2)	(3)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23.55-23.6		
고정 이동		
23.6-24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340		
24-24.05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5.150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3.55-23.6	
고정 이동	
23.6-24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340	
24-24.05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5.150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K176C	
24.025GHz(아마추어국 지정주파수) K40	

24.05-24.25 무선탐지 아마추어 지구탐사위성(능동) 5.150			24.05-24.25 무선탐지 지구탐사위성(능동) 5.150	24.125GHz(ISM 설비) K40 물체감지센서용 K40A
24.25-24.45 고정	24.25-24.45 무선항행	24.25-24.45 고정 이동 무선항행	24.25-24.45 고정 이동	특정소출력(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 K37G
24.45-24.65 고정 위성상호간	24.45-24.65 위성상호간 무선항행 5.533	24.45-24.6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무선항행 5.533	24.45-24.6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5.533	특정소출력(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 K37G
24.65-24.75 고정 위성상호간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32B	24.65-24.75 위성상호간 무선탐지위성 (지구대우주) 5.533	24.65-24.7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32B 5.533	24.65-24.7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32B 5.533	특정소출력(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 K37G
24.75-25.25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32B	24.75-25.25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35	24.75-25.25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35 이동	24.75-25.25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35 이동	특정소출력(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 K37G

25.25 - 29.5 GHz

국 제		
(1)	(2)	(3)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25.25-25.5 고정 위성상호간 5.536 이동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성(지구대우주)		
25.5-27 지구탐사위성(우주대지구) 5.536B 고정 위성상호간 5.536 이동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636C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성(지구대우주) 5.536A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5.25-25.5 고정 위성상호간 5.536 이동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 성(지구대우주)	특정소출력(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 K37G
25.5-27 지구탐사위성(우주대 지구) 5.536B 고정 이동 위성상호간 5.536 5.536A	특정소출력(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 K37G

K164

10.5~11.7GHz, 12.0~12.2GHz, 17.7~19.7GHz, 및 36.5~42.5GHz의 주파수대역은 무선전송링크용으로 사용한다.

K176C

262~264MHz, 22~23.6GHz, 57~66GHz, 122~123GHz, 244~246GHz의 주파수 대역은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으로 사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2~23.6GHz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GHz 및 22.4~22.825 GHz)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9호, 2017. 9.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표의 주파수대역 중 “24~26.5GHz”를 “22~23.6GHz”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2~23.6GHz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GHz 및 22.4~22.825 GHz)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0호, 2017.9.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가목 후단 중 “1% 이하일 것.”을 “1% 이하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수동송신의 경우: 전파발사를 시작하여 9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다만, 자동차의 주차 장치는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을 “수동송신의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는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4~26.5GHz”을 “22~23.6GHz”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2~23.6GHz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GHz 및 22.4~22.825 GHz)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